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395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285호	김대식의원	2024.7.2.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8903호	정을호의원	2025.3.13.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14439호	고민정의원	2025.11.2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12.0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5. 12. 9.)는 이상 3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 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학사·석사·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에 제1항 중 “대학원”을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 및 연계과정”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제4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 심의위원회)</u>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p> <p>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p> <p>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p>

	<p>다.</p> <p><u>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u></p> <p><u>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u></p> <p><u>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u></p> <p><u>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u></p> <p><u>항으로서 기숙사비 심의위원회</u></p> <p><u>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p> <p><u>사항</u></p> <p><u>③ 그 밖에 기숙사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u>은 학칙으로 정한다.</u></p>
<u>제11조의2(평가 등) (생 략)</u>	<u>제11조의3(평가 등)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u>
<u>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생 략)</u>	<u>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u>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u>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u>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u>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u>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u>

<신 설>

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제31조(수업연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통합 및 연계과정-----

<p>연한 이상으로 한다.</p> <p>3. (생 략)</p> <p>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33조(입학자격) ① (생 략)</p> <p>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35조(학위의 수여) ① · ② (생</p>	<p>-----.</p> <p>3. (현행과 같음)</p> <p>4. -----</p> <p>-----통합 및 연계과정-----</p> <p>-----</p> <p>-----</p> <p>-----.</p> <p>5. <u>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입학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5조(학위의 수여) ① · ② (현</p>
--	---

<p>략)</p> <p>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u>통합된</u>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u>통합된</u>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u><신 설></u></p>	<p>행과 같음)</p> <p>③ ----- ----<u>통합되거나 연계된</u>----- ----- ----- ----- ----- ----- ----- ----- ----- -----. ④ ----- ----<u>통합되거나 연계된</u>----- ----- ----- ----- ----- ----- ----- ----- ----- -----.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u>통합되거나 연계된</u>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p>
---	---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
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